

자기주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규제 강화 및 정비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26.3.6 공포 및 당일 시행. 이하 ‘3차 상법’)의 취지가 자본시장에서 실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발행공시규정(이하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이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되어야 하는 체계하에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의 투명한 공시와 관련 규정의 정합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제도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 확대 및 투명성 강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에 한하여 반기 및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주식보고서(보유현황·처리계획)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의무의 적용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라면 보유 규모와 무관하게 **연 2회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2 제6항). 아울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첨부서류로 상법 제341조의4 제4항에 따라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사본을 제출**하도록 증권발행공시규정을 정비하여(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제4-3조 제4항 제5호, 제9항),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단계와 자본시장법상 정기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과 실제 처리 현황이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시서류 제출 당시의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주의·경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탁업자 규율 강화 및 자기주식 관련 규정 정비

3차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신탁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상법 제542조의16 제1항). 상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운용 기준에서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시행령 개정안 제106조 제5항 제1호), 취득 후 1개월 내 처분 금지 등 기존의 매매회전 규제를 삭제하는 한편(시행령 개정안 제106조 제5항 제1호 나목), 상법 제542조의16 제1항 준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106조 제5항 제1호 마목). 또한 3

차 상법에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발행공시규정에서 교환사채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2 제2항 제6호 사목, 아목, 자목, 제4항.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제5-2조 제3호, 제5-9조 제1항, 제3항). 단, 2026년 3월 6일 이전 발행된 자기주식 기반 교환사채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 또한, 자기주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삭제되었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2 제2항 제6호 라목).

자기주식 처분 방식에 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 매도 방식의 자기주식 처분은 제한되나,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은 유지됩니다(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제5-9조 제5항, 제6항). 시간외대량매매 시에는 매도호가를 당일(장 개시 전의 경우 전일) 증가 기준 $\pm 5\%$ 범위 이내로 하고, 위탁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소 신고 의무 등 절차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한은 기존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상법상 보유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최대 5년 이내)으로 변경되며,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기간 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7 제4항).

3. 시사점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은 3차 상법으로 신설된 자기주식 제한과 관련, 주주총회 승인이 요구되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정기 공시 체계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하는 취지입니다. 제도 보강의 취지를 고려하면,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의 기재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보유 목적, 보유 수량·기간, 처분 시기·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러한 계획이 기업가치 제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주주들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는지 여부가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충실도가 의결권 행사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IR 부서에서는 주주총회 전후로 자기주식 활용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고, 연 2회 공시되는 자기주식보고서에서도 이행현황을 성실히 기재하는 것이 장기적 주주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자기주식 운용의 투명성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핵심 모니터링 항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¹⁾

1) 국민연금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당시에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출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법개정 취지 적극 반영, 국민연금공단, 2026. 3. 12.)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YCGC)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다양한 자문과 함께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 대응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 Areas

기업지배구조 센터

Contact

은성욱 변호사

02-528-5305

sweun@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02-528-5150

hyunjeong@yulchon.com

문성 변호사

02-528-5393

smun@yulchon.com

최기림 변호사

02-528-5706

klchoi@yulchon.com

서경희 변호사

02-528-5324

khsuh@yulchon.com

오용석 고문

02-528-6436

yongsukoh@yulchon.com

윤여훈 전문위원

02-528-5271

summeryoon@yulchon.com

정한욱 전문위원

02-528-6116

hwjung@yulchon.com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 ④(생략)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 -----.
1.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 ----- <u>취득</u>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할 것	< 삭제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주식을 <u>취득하거나 처분하지</u> 아니할 것	라. ----- ----- <u>취득하지</u> -----
< 신설 >	마. 「상법」제542조의16제1항을 준수할 것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 ① (생략)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임직원에게 대한 퇴직금·공로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u>지급</u>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라. ----- <u>지급하는 경우</u> -----
마.·바. (생략)	마.·바.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사. 「공기업을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삭제>
아.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자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삭제>
자. 아목에 따른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삭제>
차. 카. (생략)	차. 카.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삭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 ----- 자기주식을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 ③ (생략)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6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④ ----- 「상법」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상의 예정된 보유 기간을 말하며, 보유 기간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결과보고서(이하 "처분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처분결과보고서에는 처분(교환사채 발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	<삭 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법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매도주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u>	<삭 제>
1. <u>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개시전에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전일의 종가와 전일증가를 기준으로 2 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며,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도주문(정정매도주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시간 중 매도주문은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이 종료하기 30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u>	<삭 제>
2. <u>1일 매도주문수량은 처분신고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처분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할 것. 다만, 그 많은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할 것</u>	<삭 제>
3. <u>매도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 후 즉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1일 매도주문수량등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할 것</u>	<삭 제>
4. <u>매도주문 위탁 투자중개업자를 1일 1사로 할 것(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정한 처분기간중에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5사를 초과할 수 없다)</u>	<삭 제>
⑥ <u>법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매도주문의 호가는 당일(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전일을 말한다)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낮은 가격과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u>	⑥ -----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